

※ 번역문은 민원 신청을 위한 참고용이며, 기존의 한글 서식에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こちらの翻訳文は民願申請の参考用であり、提出時には既存の韓国語の書式に韓国語でご記入くださいますようお願いいたします。

[양식 제4호]

[様式第4号]

<div> <div> <div>입양신고서</div> <div>養子縁組届</div> <div> (년 월 일) (年 月 日) </div> </div> <div> ※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 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 届出書は、裏面の作成方法を参考に記入し、選択項目には「○」をつけてください。 </div> </div>									
구분 区分		양부 養父				양모 養母			
① 양친 ① 養親	성명 氏名	한글 ハングル	(성) / (명) (氏) / (名)	본(한자) 本貫 (漢字)		한글 ハングル	(성) / (명) (氏) / (名)	본(한자) 本貫 (漢字)	
		한자 漢字	(성) / (명) (氏) / (名)	출생연월일 生年月日		한자 漢字	(성) / (명) (氏) / (名)	출생연월일 生年月日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			
	등록 기준지 登録 基準地								
	주소 住所								
② 양자 ② 養子	성명 氏名	한글 ハングル	(성) / (명) (氏) / (名)	본(한자) 本貫 (漢字)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		
		한자 漢字	(성) / (명) (氏) / (名)	성별 性別	(1)남 (1)男 (2)여 (2)女	출생연월일 生年月日			
	등록기준지 登録基準地								
	주소 住所								
③ 양자의 친생부모 ③ 養子の 実父母	부 父	성명 氏名		등록기준지 登録基準地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						
	모 母	성명 氏名		등록기준지 登録基準地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		
④ 기타 사항 ④ その他の事項							
⑤ 입양허가법원 ⑤ 養子縁組を許可した裁判所					허가일자 許可年月日	년 월 일 年 月 日	
⑥ 동 의 자 ⑥ 同意者	부 父	성명 氏名	(서명 또는 날인) (署名又は捺印)				
	모 母	성명 氏名	(서명 또는 날인) (署名又は捺印)				
	부모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 법원 父母の同意に代わる審判裁判所			심판일자 審判日	년 월 일 年 月 日		
	부모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사유 父母の同意を得られない理由						
	양자의 배우자 養子の配偶者	(서명 또는 날인) (署名又は捺印)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		
⑦ 신고인 ⑦ 届出人	양부 養父	(서명 또는 날인) (署名又は捺印)			전화 電話 番 号		
					이메일 電子 メール アドレス		
	양모 養母	(서명 또는 날인) (署名又は捺印)			전화 電話 番 号		
					이메일 電子 メール アドレス		
	양자 養子	(서명 또는 날인) (署名又は捺印)			전화 電話 番 号		
					이메일 電子 メール アドレス		
	법정 대리인 法定代 理人	(1) 부모 (1) 父母	부 父	(서명 또는 날인) (署名又は捺印)	전화 電話 番 号		
			이메일 電子 メール アドレス				
	모 母	(서명 또는 날인) (署名又は捺印)	전화 電話 番 号				

					이메일 電子 メール アドレス	
		(2)후견인 (2)後見人	(서명 또는 날인) (署名又は捺印)	전화 電話 番号		
				이메일 電子 メール アドレス		
⑧신고인 출석여부 ⑧届出人の出席有無			(1) 양부 (2) 양모 (3) 양자 (1) 養父 (2) 養母 (3) 養子 (4) 법정대리인(①부 ②모 ③후견인) (4) 法定代理人 (①父 ②母 ③後見人)			
⑨제출인 ⑨提出者	성명 氏名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他人の署名又は印章を盗用して虚偽の届出書を提出したり、虚偽の届出を行い、家族関係登録簿に事実と異なる内容を記載させた場合は、刑法に基づき5年以下の懲役若しくは1千万ウォン以下の罰金に処せられます。

작성방법 作成方法

※ 등록기준지: 각 난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登録基準地: 各欄の該当者が外国人の場合はその国籍を記入してください。

※ 주민등록번호: 각 난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 住民登録番号: 各欄の該当者が外国人の場合は外国人登録番号(国内居所申告番号又は生年月日)を記入してください。

①란 및 ②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경우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欄①及び欄②: 法第25条第2項に基づき、住民登録番号欄に住民登録番号を記入した場合は、生年月日の記入を省略することができます。

④란: 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에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欄④: 下記の事項及び家族関係登録簿へ明確に記録するために、特に必要な事項を記入してください。

- 양자가 될 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하고 이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 養子になる者が13歳未満の場合、法定代理人がその代わりに養子縁組を承諾し、届け出る場合はその理由
- 민법 제869조제3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법정대리인의 승낙 없이 입양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
- 民法第869条第3項に基づいて家庭裁判所が法定代理人の承諾なしに養子縁組を許可した場合はその理由

⑤란: 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이거나,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입양허가법원 및 허가일자를 기재합니다.

欄⑤: 養子になる者が未成年者又は成年被後見人が養子縁組若しくは養子になる場合は、家庭裁判所の許可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その場合は養子縁組を許可した裁判所及び許可年月日を記入してください。

⑥란: 동의자란의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欄⑥: 同意者欄の作成方法は以下のとおりです。

-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받은 경우 동의자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家庭裁判所の養子縁組許可を受けた場合、同意者欄は記入しないでください。
-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를 갈음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합니다.
- 養子になる者が成年の場合は父母の同意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父母が正当な理由なしに同意を拒否する場合は、代わりに家庭裁判所の審判を受けなければなりません。ただし、父母の所在不明等の理由で同意を得られない場合はその理由を記入してください。
- 배우자 있는 자가 양자가 될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配偶者がいる者が養子になる場合は、他方の配偶者の同意を得る必要があります。

⑦란: 양자란에는 양자가 될 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며, 다만 양자가 될 자가 13세 미만일 때에는 양자란에는 기재하지 않고 법정대리인이 법정대리인란의 해당 항목번호에 ‘영표○’으로 표시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그러나 민법 제869조제3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법정대리인의 승낙 없이 입양을 허가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란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欄⑦: 養子欄には養子になる者が署名又は捺印しますが、養子になる者が13歳未満の場合は養子欄に記入せず、法定代理人が法定代理人欄の当該項目の番号に「○」を付けて署名又は捺印してください。しかし、民法第869条第3項に基づいて家庭裁判所が法定代理人の承諾なしに養子縁組を許可した場合は、法定代理人欄は記入しないでください。

⑨란: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하여야 함].

欄⑨: 提出者(届出人が記入した届出書を届出人でない者が提出する場合のみ記載)の氏名及び住民登録番号を記入してください[受付担当公務員は身分証明書との照合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첨부서류 添付書類

※ 아래 1항은 가족관계등록관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 생략합니다.

※ 以下の第1項は、家族関係登録官署にて情報システムでその内容が確認できる場合は添付を省略してください。

1. 입양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입양관계증명서 각 1통.
1. 養子縁組の当事者の家族関係登録簿の基本証明書、家族関係証明書及び養子縁組関係証明書 各1通
2.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이거나, 피성년 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경우).
2. 養子縁組に対する家庭裁判所の許可書謄本及び確定証明書 各1部 (養子になる者が未成年者の場合、又は成年被後見人が養子を迎える若しくは養子になる場合)
3. 입양동의서 1부(입양에 대하여 부모 또는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다만 동의한 사람이 입양신고서의 “동의자”란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에는 제외).
3. 養子縁組同意書 1部 (養子縁組について父母又は配偶者の同意が必要な場合、ただし、同意した者が養子縁組届の「同意者」欄に氏名と住民登録番号を記入して署名又は捺印した場合は除く)
4. 양자가 될 자가 성년자로서 부모의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4. 養子になる者が成年者で、父母の同意書を添付していない場合
 -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서 또는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을 소명하는 자료(예시: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 등본)
 - 父母の同意に代わる家庭裁判所の審判書又は父母の所在不明等の理由で同意を得られないことを証明する資料 (例: 住民登録抹消、居住不明謄本)
5.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5. 事件本人が外国人の場合
 - 한국 방식에 의한 입양 :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韓国の方式による養子縁組 : 国籍を証明する書面 (旅券又は外国人登録証) の写し
 - 외국 방식에 의한 입양 : 입양증서 등본 1부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 外国の方式による養子縁組 : 養子縁組証書謄本1部及び国籍を証明する書面 (旅券又は外国人登録証) の写し1部
6. 양자가 될 자가 외국인인 경우, 그 자녀의 본국법이 해당 신분행위의 성립에 자녀 또는 제3자의 승낙이나 동의 등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6. 養子になる者が外国人の場合、その子の本国法が当該身分行為の成立において子又は第3者の承諾若しくは同意等を要件とする場合は、その要件を満たしていることを証明する書面
7.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0호에 의함]
7. 身分を確認できるもの [家族関係登録例規第600号に基づく]
- ① 일반적인 입양신고
- ① 一般的な養子縁組の届出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 届出人が出席した場合 : 届出人全員の身分証明書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
 - 届出人が欠席し、提出者が出席した場合 : 提出者の身分証明書及び届出人全員の身分証明書又は署名公証又は印鑑証明書 (届出人が本人の身分証明書なしに届出書に署名した場合は署名公証、届出書に印鑑を捺印した場合は印鑑証明書)
 -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 郵送で提出する場合 : 届出人全員の署名公証又は印鑑証明書 (届出書に署名した場合は署名公証、印鑑を捺印した場合は印鑑証明書)
- ② 보고적인 입양신고(증서등본에 의한 입양 포함)
- ② 報告的な養子縁組の届出 (証書謄本による養子縁組を含む)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 届出人が出席した場合 : 身分証明書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提出者が出席した場合 : 提出者の身分証明書
 -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郵送で提出する場合 : 届出人の身分証明書の写し
-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7항의 ②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 届出人が成年後見人の場合は、第7項の②の書類の他に成年後見人の資格を証明する書面も添付してください。

- ※ 양자가 13세 미만인 입양에서 법정대리인의 출석 또는 신분증명서의 제시가 있거나 인감증명서의 첨부이 있으면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제시 또는 인감증명서의 첨부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 養子が13歳未満の養子縁組において法定代理人の出席又は身分証明書の提示があるか、印鑑証明書の添付がある場合、届出人の身分証明書の提示又は印鑑証明書の添付があるものと見做します。